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47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9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

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29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